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
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이하 「교원지위법」) 개정('25.3.18.)으로 교육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,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명시(안 제23조의2)
- 「교원지위법」 개정으로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위탁 규정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이견 없음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위탁)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
2.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2(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위탁)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<u>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</u> <u>2.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</u> <u>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원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487